

日帝强占期
釜山地域 市街地計劃에 관한 公文書

김 경 남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차 례

- I. 머리말
- II. 부산 시가지계획관련 공문 분류
 - 1. 총 론
 - 2. 정책결정·기구
 - 3. 예산·시행
- III. 주요 공문철 『부산도시계획결정』 해제
 - 1. 해제 개요와 총독 결재 문서
 - 2. 1936~1944년 결정과정의 기록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1876년 부산에 조계(租界)가 설정된 시기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이 된 시기까지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부산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를 조사·발굴하고 주요 기록물을 해제하는 것이다. 주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된 조선총독부 기록군(記錄群) 중에서¹⁾ 부산의 시가지계획 관련 자료 71철 35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²⁾

일제강점기 부산 시가지계획 관련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도시 건설이 개발이나 수탈이나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부산의 근대도시 건설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제 정책을 발현할 때 생산되는 공문서는 그 지역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기구분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부산의 시가지계획은 일제의 대륙침략과 연관되어 도시화·공업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시기를 나누어 보면, 제1단계 일본인 거

-
- 1)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문서류가 3만2천여권, 도면류가 약 85만매이다 (2004년 현재). 이 기록물군은 외사·경무·이재·사계·법무·수리조합·토목·토지개발·행형·편집·인사·임정·지방행정·학무·사회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2000년도 경무편을 비롯하여 2001년 외사편, 2002년 이재·사계·상공·경금속·연료·노무편, 2003년 학무·사회교육편, 2004년도에는 건축·세무편에 대한 해제집을 발간하였다.
 - 2) 부산의 시가지계획 관련 기록물건수는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의 검색도구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목록기술(Description)이 완료될 경우 관련기록물의 건수가 변동될 수도 있다.

류지 정착기 (1876~1910년), 제2단계 개항장·개시장의 식민도시화기 (1910~1933), 제3기 신시가지 건설 및 기성도시 개발기 (1934~1945)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1910년 병합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34년의 기간은 조선 전체에서는 기존 전통도시의 구조에 따라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있었던 기간이지만, 조선·일본간의 무역장소인 부산포가 왜관에서 거류지로 확정된 후 목포·마산·진남포·성진 등으로 일본의 거점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제2기는 조선이 일본의 완전 식민지가 되고 총독부가 본격적으로 식민지 지배체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시기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병합〉 이전의 각국 거류지를 철폐하고 府制를 실시하면서 식민지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여 부산항 거류지를 부산부로 승격시켰다. 총독부의 府制와 面里制 실시는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성하여 그들의 정책 의도에 맞게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함이었다.³⁾

제3기는 일본의 대중국·대남양 침략으로 조선이 병참기지로 활용된 시기로서 1934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이다.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일제는 그 경제적 돌파구를 중국 대륙침략을 통한 시장개척으로 찾으면서 조선의 역할은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서 역할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4년에는 조

3) 부산 이외에도 이 당시에 12府가 대상이었는데, 서울을 비롯하여 원산·마산·목포·신의주·진남포·평양·군산·대구·청진이었다(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1996. 김경남, 『日帝下朝鮮에서의 都市 建設과 資本家集團 網』,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3, 54~55쪽).

선시가지계획령이 발표되었다. 나진·청진 등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남부지역의 경성부·부산부에도 시가지계획이 전개되었다. 부산부에는 범일·영선·송도지구가 시가지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었다.

이처럼 부산은 일제 강점 초기에는 침략의 전초기지로서 후기에는 후방 병참기지로서 규정되어 그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부산지역은 항구도시로서 성장하였으며 후에 상공업 도시로 발달하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거점으로로서의 필요 때문에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협소한 거류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확대되었고, 도로나 철도 건설 등이 모두 대륙침략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산 주변의 지역적 특성이나 물산의 흐름을 기초로 하여 발달된 도시와는 거리가 먼 부정적인 측면이 배태되었다. 이 점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정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부산지역이 개항장의 거류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의 도시건설은 일제침략 정책에 따라 진행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제3기에 조선총독부 및 부산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어떠한 시행이 이루어졌는가를 밝힐 수 있는 공문서를 발굴·분류하고자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 기록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공문서 자체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⁴⁾ 기존 연구에서는 기안문과 시행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4) 한국 국가기록연구원에서는 2004년 9월부터 2개년에 걸쳐 ‘일제시기 도시계획관련 공문서에 관한 기록학적 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독부 공문서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정책이 실현될 때는 사안에 대하여 기안·시행·고시·변경·확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문서가 생산된다. 주지하듯이 역사적 사실은 이러한 공문서 속에 수록되어 있는 사안이 시작되고 종결될 때까지의 사실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재의 유무이다. 그 중에서도 사안에 따라 즉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총독이 결재하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정무총감, 내무국장이 대결이나 전결을 한다. 둘째, 조선총독부 기록군의 기록물은 편철 순서가 시기순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편철되어 있다. 즉, 1945년이 위 1936년이 아래의 순서로 편철되어 있다. 그 속에서도 편철순서가 시기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사본이나 맥락을 알 수 없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어 기안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건을 분류해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 하나의 기록물철에 各道의 시가지계획 사항이 모두 합철되어 있어, 하나의 부에 대한 도시계획을 건별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공문서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제 특징과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부산부 시가지계획 관련 대상문서를 분류하면 대체로 시가지계획 정책결정, 기구, 예산, 공사 시행관련 등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서술방식은 먼저 제2장에서 각각의 기록물 세부건을 정책 및 기구, 예산 및 시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부산의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록물철인 『부산도시계획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제하고자 한다.⁵⁾

5) 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내용은 기안문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시된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수집 및 발굴 작업이 진행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 부산의 시가지계획관련 기록물에 대한 대체적인 주요한 건들은 모두 기록물건명이라는 검색도구를 통하여 검출되었지만, 목록기술(Description)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두 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요약을 통한 검색도구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기록물군 중에서 '부산' 혹은 '시가지'라는 명칭이 기록물철명이나 기록물건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건별로 정리하고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가지계획의 골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록물철인 『부산도시계획결정』 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제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총독의 재가가 있는 주요 기록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요 시가지계획관련 공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II. 부산 시가지계획관련 공문 분류

1. 총론

이 절에서는 부산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분류대상, 주요철명,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산기관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는 대체로 정책결정 및 기구, 예산, 시

되어야 할 것이다.

행관련 공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부산 시가지계획 관련 정책결정 및 기구와 관련된 공문서기록 71철 35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936년~1944년까지 생산된 『부산도시계획결정』 철, 1937년 생산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서』 철, 1938년 『토지수용사업인정 (각도)』, 1942년 『도로공사실시계획서』 등이다.

그리고 부산부의 시가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구는 소관부서로서 조선총독부 내무국, 조선총독부 소속 시가지계획위원회, 부산부, 부산토목출장소 시행처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기록물철로는 『조선총독부관보』나 『직원론』 등이 있으며, 1936년~1944년 『부산도시계획결정』 철에 추진 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회에서 제5회까지 『시가지계획위원회』 철, 1937년 『부산토목출장소 신축공사』 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공문 생산기관인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변화과정을 고찰해보자. 부산부의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를 생산한 기관은 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으로서, 당시 조선내의 주요정책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부서이다. 여러 차례 부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내무국의 주요업무는 그대로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내무부는 탁지부, 농상공부와 함께 대한제국 시기의 기구가 그대로 존치되었다.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는 총독관방과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 그리고 사법부를 설치하였다.⁷⁾ 2년 후인

6) 이 기록물철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일부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다.

7) 「朝鮮總督府官制」, 勅令 第354號, 「朝鮮總督府官報」第28號, 明治43年(1910年) 9月 30日.

1912년에 조선총독 官房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내무부가 일대 개편되어 서무과가 폐지되는 한편 지방국 산하로 토목과와 위생과가 이관되어 지방국은 제1과, 제2과로 편제되었다.⁸⁾ 1915년 5월에는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편되면서 지방국이 폐지되어 제1과 제2과를 내무부 직속하에 두게 되었다.

1919년 8월 19일 조선총독부는 官制를 개정하고 8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때 조선총독부의 관제는 6국 3부제였다. 종래의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가 내무국·재무국·식산국·법무국으로 변경되었다.⁹⁾ 이러한 체제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변동된 사항은 기존의 내무국에서 토목과가 강화되어 각부에 토목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총독부 소속 하에 시가지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선시가지계획에 대한 의결기관을 갖추었다.

이후의 중요한 변동사항으로는 1941년 11월 사회과와 노무과로 이루어져 운영되어 오던 '내무국'을 국민총력과, 외무과, 척무과로 이루어진 司政局으로 개정한 것이 그것이다.¹⁰⁾

1942년 11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는 대동아성(大東亞省)을 설치하여 조선총독의 권한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행정합리화'라는 취지에 따라 후생국·기획부가 폐지되고 총무국이 신설되었다.¹¹⁾

8)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 第27號, 「朝鮮總督府官報」第475號, 明治45年(1912年) 3月 30日.

9)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 第30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大正8年(1919) 8月 20日.

10)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 第103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6年(1941) 11月 19日.

11)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 朝鮮總督府訓令 第54號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43년 일본 정부에 軍需省, 農商省, 運輸通信省이 신설됨에 따라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 기구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¹²⁾ 종래의 총무국·사정국·식산국·농림국·철도국·전매국이 폐지되고, 鑛工局·농상국·교통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식량, 지하자원 등 물적 수탈과 징병, 징용 등 인적 수탈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구를 대폭 축소시킨 일원적 통합체제였다.

이렇듯 내무국은 통감부 이후 조선총독부 시기에 많은 변천을 하였으나 그 업무는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관련해서는 시가지계획 결정 이후 늘어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토목과를 강화시켰으며 각지에 토목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조선시가지계획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정책결정·기구

이 기록물 그룹에는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철, 공업용지 조성관련 서류철, 부대공사 설계도 등이 있다. 1930년대에 조선의 도시화와 공업화는 일본의 對중국·對남양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일본독점자본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후방공업기지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총독부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발효하였고, 그것은 기존의 거류지에서 성장한 식민 도시의 계발과 함께 진행되었다.¹³⁾

거류지에서 성장한 식민도시 중의 하나인 부산의 시가지계획에 대

昭和17年(1942) 11月 1日.

12) 「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改正)」朝鮮總督府訓令 第884號『朝鮮總督府官報』號外 昭和18年(1943) 12月 1日.

13) 김정남, 『앞의 논문』, 2003, p.79 참조.

한 정책 관련 문건 중 주요한 것으로는 『부산도시계획결정』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서철』 등이 있다.

특히 『부산도시계획결정』 철은 부산의 시가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의 시가지구역·가로·토지구획 등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철로서 귀중본서의 가치를 가진다.

조선총독부 내무부에서 1936년부터 1944년까지 생산된 이 기록물 철에는 부산의 시가지계획 토지구획 정리지구·가로·구역·녹지지구·풍치지구·공원·주택지경영지구 등에 대한 결정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일정·부전리·영선정 토지구획정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공사 시행명령 문서까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 시가지계획에 대한 각 군의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공문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이 제2회부터 제5회까지 남아있다. 이 중 부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룬 기록물은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 관계서철』이다. 『제2회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서철』에는 「경성 시가지계획 가로망 및 同 토지구획정리 결정에 관한 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면과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관계서철』(관리번호 CJA0014430)은 1937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생산되었으며, 부산의 시가지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목포·대구·평양·신의주·함흥·인천 등에 대한 것도 함께 수록되어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무총감의 인사, 회의개최, 각 도시에 대한 시가지계획 결정, 회의 답신서, 자문안 송부 그리고 의안에 대한 세부건등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 부산관련 기록물건은 부산부회의 답신서, 부산시가지계획 가로결정·토지구획 등의 결정이유서 등이 있다.

그러면 이 문서철 가운데 부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는 시가지계획결정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총독부가 1934년 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여 경성·나진·청진·성진의 3부 1읍에 대해 신흥도시 건설과 기성시가지 개량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시 부산·인천·목포·대구·평양·신의주 및 함흥에 대해 시가지계획령을 적용하여 시가지계획구역, 同 가로 및 同 토지구획 정리결정에 관해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議題 중 부산과 관련된 것은 「부산 시가지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건」 「가로망 결정」 「토지구획정리 결정」 등이다.¹⁴⁾ 이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계획안 작성의 경로는 최초로 기본조사(인구·교통·경제·지형 등)를 거쳐 계획안(案)을 작성하였다. 軍기관에도 중요 도시계획에 대해 협의를 거쳤으며, 관계부회, 읍면회에 자문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도지사의 도읍말에 기초하여 다시 신중히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의 현황에 대해 인구, 도로, 구역으로 나뉘어져 서술되어 있다. 부산의 시가지계획에서 특이한 것은 대신정으로부터 초량에 이르는 [터널]의 개착(開鑿) 공사이었다.¹⁵⁾

또한 이 기록물철에서는 시가지계획위원회에 참석자 명단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직구성도 알 수 있다. 시가지계획위원

14) 조선총독부, 『제3차 시가지계획위원회』, 1937, p.10.

15) 『위와 같음』, p.14.

회는 정무총감 大野綠一郎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총독부 내무국장·재무국장·식산국장·농림국장·경무국장·체신국장·철도국장·심의실사무관·조선군참모장·진해요항부참모장·조선식산은행 대표·중추원참의·조선상공회의소 회두(會頭)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평안남도지사·평안북도지사·함경남도지사·제20사단 참모장·간사·총독부사무관(지방과장) 경무과장 토목사무관·기사(토목과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인은 유일하게 중추원참의 한상룡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시기의 개발 주체가 당연히 일본인이었겠지만, 조선인은 한사람만을 참석시킴으로써 그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37년 1월 19일 제출¹⁶⁾한 議 제1호의 내용은 부산부 1936. 2. 14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따른 부산부의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을 의제로 하여, ① 회의록 ② 가로결정 ③ 부산부 회의 답신서 ④ 목포부회와 면협의회 답신서 ⑤ 계획에 관한 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은 물론 목포, 대구, 평양, 신의주, 함흥, 인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제3차 시가지계획위원회철에는 부산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시가지계획구역, 가로, 토지구획정리 결정 제안서와 시가지계획위원회의 조직구성 등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문서철이다.

『제4차 시가지계획위원회철』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는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규정」 「시가지계획 결정자문에 대한 답신」 「경성 시가지계획 지역 결정자료」 議題 1~5호가

16) 『앞과 같음』, p.47.

지 수록되어 있으며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제2권에는 경성·청주·부여·광주·해주·홍남·신의주·양시·다사도 지역의 시가지계획 구역, 가로,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이 도면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제3권에는 부여·광주·해주·홍남·신의주의 시가지계획 구역 가로 및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안(추가결정안 포함) 등이 도면과 함께 편철되어 있다.

제4권에는 주로 경성부 외 8부 읍면의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것은 물론 시가지계획위원회 임시위원회의 예비 지급이나 접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의사속기록이 첨부되어 있어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제5차 시가지 계획위원회 관계철(경인·부산)』에는 위원장 정 무총감의 인사, 경인 시가지계획자문에 관한 담화 발표, 경인 및 부산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도면과 결정안 속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다. 특히 경인 및 부산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은 당시의 부산 시가지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이러한 시가지계획위원회의 기록물철 이외에도 『면폐지 및 구역 변경 관계철』은 동래군 부산면이 부산부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부산의 상수도 자원조사서』 『부산마산진해 항만현황 조사표』 『부산진해마산항 현황조사서』 『항만조사에 관한 건』 등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한 조사서들이다.

또한 시행 기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물철은 『부산토목출장소 신축공사에 관한 철』이다. 1937년에 생산된 『초동 제1구축제공사설 계서철』 『부산항 적기방파제 축조공사 설계서철』 『부산항 제2부

두 남측 잔교교면 수선공사 설계서철 부산토목출장소』라는 기록물철 속에는 「부산토목출장소장 관사 신축공사 변경설계사양서 및 도면」과 「昭和 12年度 부산토목출장소장 관사신축공사 준공 보고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조선총독부에서 생산된 부산 시가지계획 결정관련 공문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의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정책·기구에 관한 기록물들은 조선 시가지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선총독부에서 결정하였으며 부산부에서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데 의미를 가진다.

3. 예산·시행

부산부의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정책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가 예산이다. 예산에 관하여 주요한 문서는 1936년 「각부 경제예산」 1938년 「부산부 일반경제관계철」 1938년 「府 제1부 제2부 특별경제 예산서류」 1939년 昭和14년도 기채철, 1940·1941·1942년도 「부산부 세입출예산철」 1941년 府일반경제 기채차입과 상환표철, 1943년 道 기채 계속비 등이다.

부산의 시가지계획을 위한 예산관련 공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6년 생산된 『각부경제예산』(관리번호 CJA0003214) 기록물철에 「昭和 11年度 부산부 제1부 특별경제세입출예산」이라는 세부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철에 「昭和11年度 부산부 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예산」이 편철되어 있다.

1938년도에는 시가지관련 예산관련 기록물철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주로 『부산부 일반경제 관계철』에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관리번호	분류	기록물철명	기록물건명	생산연도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동삼동도로개수비기채의건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시가지계획사업도로개수공사비충당기채의건(도면첨부)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시가지계획사업도로개수공사비충당기채인가의건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시가지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조례설정의건(회의록첨부)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시가지계획특별세조례설정의건(도면첨부)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제1토지구획정리비부담금조례설정의건(회의록도면첨부)	1938
CJA0003371	예산	부산부일반경제관계철	부산부 특별세 토지평수할 조례설정의건	1938

위의 기록물의 특징은 부산부에서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최초로 예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산지역은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진 후 협소한 일본인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로개정, 시구개정 등은 늘어나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주택문제, 용지부족 문제 등을 초래하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부도심을 개발하고자 시가지계획을 단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문제는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지계획사업의 도로개수 공사비 충당비, 수익자부담금 조례 설정, 특별세 조례 설정, 제 1토지구획정리비 부담금 조례 설정, 특별세 토지평수할 조례 설정 등 부산부 시가지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예산부분이 편철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1938년도 府 제1부 제2부 특별경제 예산서류철에는 부산부의 제1부, 제2부 특별경제세입출 예산에 대한 세부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府 제1부 특별경제관계철」에는 부산부의 기채 차입 및 기채 상환보고, 특별기채상환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별경제 기채의 건에는 회의록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제2부 특별경제관계서철(대구·부산·마산·평양·진남포·신의주)』(관리번호 CJA0003379)에는 시가지계획 중 「부산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계속비 설정인가의 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부 특별 경제 가옥세 부가세의 조례」를 폐지하는 건과 특별경제 기채의 건이 같은 기록물철 속에 편철되어 있다.

다음으로 1939년도 『府 제1부 특별경제관계철』에도 특별경제 기채에 대한 건이 수록되어 있다. 회의록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 도로개수공사비 등의 기채가 어떻게 편성되고 변경되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건이다.

1940년대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예산은 특별히 투입되어야 할 곳만 투입되었다고 보인다. 1940년대에 생산된 문서 『부산부 세입출 예산철』에 따르면, 부산부의 경우 수도비나 제1토지구획 설정 추가 비용을 예산에 투입하는 등 이 당시 부산부의 시가지계획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업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건은 府에 관한 세입출예산 관련건과 세입출 추가예산이 수록되어 있으며, 1940년도 부산부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예산의 건이 제3회까지 수록되어 있다. 이 세부건은 모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1940년에 생산된 『부산부관계철』(관리번호 CJA0003552)이다. 부산부관계철은 해마다 생산되는 기록물철이지만,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84회 부산부회 회의에서 결정된 세부건으로서, 「부산부 계속비 설정 인가에 관한 건」 「부산부 도매시장 확장비 기채의 건」 「부산부 시가지계획사업 자성대우회도로 개수공사비 기채의 건」 「부산부 청사 증축비 기채의 건」 「부산부 상수도확장비 기채의 건」이 있다. 이 외에도 제87회 부산부회에서 다루어진 「특별지세 부가세 신설의 건」이 있고, 제88회 부산부회에서 다루어진 「부산부 특별영업세 잡종세 조례중 개정의 건」 「부산부 감만리 시구정리사업비 기채의 건」 등이 회의록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1941년도에 생산된 『부산부관계철』은 부산부 시가지계획 사업이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서철이다. 주로 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례설정이나, 도로개수공사·방공시설비 충당 기채에 대한 문서, 부산부계속비 제 1토지구획정리비 연기 및 지출방법 변경에 대한 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89회, 제92회, 제93회, 제95회, 제96회 부산부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1941년도에는 부산부의 기채상환에 관한 건이 6건 수록되어 있다. 모두 기채상환, 기채상환표, 기채차입표, 상환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부건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물철은 『府일반경제 기채차입과 상환표철』이다.

다음은 『府일반경제세입출예산서』철에 「소화 16년도 부산부의 세입출 예산 보고의 건」이 회의록과 함께 수록되어 있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건이 수록되어 있다. 『府제2부 특별경제 세입출 예산서류』 철에는 「소화 16년도 부산부 제2부 특별경제세입출예산」 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부산부의 시가지계획과 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서이다.

위의 예산 관련철들이 모두 간접적인 것인데 비해, 1942년에 생산된 『부일반경제 세입출예산서류』에는 「昭和 17年度 부산부 제1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昭和17年度 부산부 제 2토지 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제99회 부산부회 회의록」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규정 설정의 건 (경남 부산부)」 「제95회 부산부회 회의록」 등이 편철되어 있어, 부산부의 토지구획정리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부의 시가지계획에 대한 상당부분이 수익자 부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부산부관계철』에 편철되어 있는 「부산부 방공 도로개수공사비 추가 기채의 건」에는 도면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는 도시의 소개(疏開)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기록물철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부산부 하급노무자수용지 조성사업비 계속비 설정의 건」 또한 노무자들을 위한 수용지 조성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42년 『부산부관계철』에도 「수도공사비 계속비 설정」 「시가지 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조례 중 개정」 「영주정 대청정간 방공도로 개수공사 기채의 건」 「부대 택지조성 사업비 설정 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99회 제 100회 부산부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 자료는 당시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을 후방물자보급기

지로서 정비하기 위해 계속 시가지계획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943년에는 『府 일반경제 예산철』에 「소화 18년도 부산부 제1토 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세입출예산」이라는 세부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도기채 계속비 의무부담 부역부과에 관한 철』에는 「부산 시가도로개수공사에 대한 보조예산외 의무부담의 건」이 제19회 경상남도회 회의록과 함께 편철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서철은 1938년 매립준공인가, 1940·1941·1942년 부산부관계철, 1940년 토지매도대장, 1944년 국유재산 매수 등이다. 부산 시가지계획에 대한 시행관련건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 존재한다. 관련기록은 도로공사, 토지매수, 용도변경, 국유재산의 관리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매립의 인가, 토지의 매도, 국유재산의 매수 등을 통한 토지 소유권의 변동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논고를 통해 면밀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주요 공문철 『부산 도시계획 결정』 해제

1. 해제 개요와 총독 결재 문서

부산의 시가지계획관련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한 공문서철은 『부산 도시계획결정』이다.¹⁷⁾ 이 기록물철은 1936년부터 1944년까지 부산

17) 이 기록물철의 원명은 표지에는 『부산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해방 이후 부산 도시계획 관련만 편철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서담당자가 써 놓은 것이라 추정된다.

의 도시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로서, 부산의 시가지관련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 기록물군은 문서를 중심으로 편철되어 있으며, 사진 일부와 도면은 첨부물로 부착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편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기록물철은 1936년 5월 7일자 「부산 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으로부터 1940년 7월 5일자 「부산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 및 同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결정에 관한 건」 까지 모두 10건의 기안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시행문을 포함하여 각종 참고자료가 다수 편철되어 있다.

편철 순서는 시기순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편철되어 있다. 즉 1940년 생산분이 1페이지부터 시작되고, 대체로 1938·1937·1936년 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다음 표는 조선총독이 결재하거나 내무국장이 전결한 문건 등에 대해 작성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사본이나 첨부물이 여러 건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기안문을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선총독의 결재여부일 것이다. 『부산도시계획결정』 철은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서 조선총독이 결재한 문서는 모두 5건으로 표의 3. 4. 5. 6. 10번이 그에 해당된다.

연번	최종결재자	기록물건명	주요내용	결재일	첨부건수
1	내무국장전결	부산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 및 동토지구획 정리 지구 추가결정에 관한 건	시가지계획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 府廳에 자문하고 시가지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1940. 7. 5	7건
2	정무총감	시가지계획결정에 관한 건	시가지계획결정은 관계부회 및 면협의회 의 자문을 받아 결정 완료할 것 (시국관계로 공문생략)	1940. 5. 30	1건
3	총독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에 관한 건	범일정·양정리·좌천정의 대로에 관해 변경된 안	1939. 1. 18	2건
4	총독	「부산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시행 명령의 건」	주택지 및 공장부지의 조성에 대해 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시행을 행정청인 부산부윤이 시행 명령할 것	1939. 1. 7	6건
5	총독	「토지구획정리의 시행에 관한 건」	(긴급)영선정·범일정·부전리의 각 지역내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 시행 인가 신청기한을 1938년 7월31일자로 지정	1938. 5. 26	4건
6	총독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 동 가로 및 동토지구획 정리 지구 추가결정에 관한 건」	시가지계획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府廳의 자문을 완료하고, 시가지계획위원회에 대해 시국관계상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신중하게 조사 考究하여 결정	1938. 3. 30	2건
7	결재없음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	개성부 외 6개소의 시가지계획 구역 동 가로 및 동 토지구획 정리 지구 결정 및 부산부 외 3개소의 시가지계획 가로, 토지구획 정리지구 등의 변경·결정	1937. 12. 3	2건
8	내무국장	「부산시가지계획면도에 관한건案(對1936.12.7)」	시가지계획도면은 진해항 요새사령관 승인 조건하에 부산도시계획입안 및 연구목적으로 공무용으로 사용하 여서 일반인은 비공개, 도면은 책임자를 두어 회수하여 소각하라는 것	1937. 1. 14	3건
9	내무국장	「부산시가지계획구역 동 가로망과 동 토지구획 정리에 관한 자문서 송부의 건」	내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 구역 확장 결과 의원 3명 증원을 통보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당초 부회 의원 36명이 39명으로 증원	1936. 11. 9	0건
10	총독	「부산시가지계획구역 동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 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	부산부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산부윤·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통첩안이 포함	1936. 10. 27	6건
11	내무국장(비밀)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조선군사령관, 진해만요새사령관, 진해요항부사령관에게 보낸 기안문, 부산시가지계획 구역 및 가로망 계획에 대해 의견을 조회	1936. 5. 7	0건

2. 1936~1944년 정책 결정과정의 기록

이 기록물철은 생산된 역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므로 가장 먼저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40년 7월 5일 기안한 「부산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 및 同 토지구획정리 지구 추가결정에 관한 건」이다. 관계 번호 土제175호¹⁸⁾로서 도시계·행정계에서 기안하여 토목과장의 검토를 거친 후 정무총감 부재로 내무국장이 결재하였다. 시가지계획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 府廳에 자문하고 시가지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계획 가로 중 부전리 제8호 광장을 폐지하고, 문현리·범일정 제3호 광장을 기점으로 하여 범전리·연지리 제11호 광장을 종점으로 하던 大路는 부전리 제15호 광장까지로 단축하고 부암리·가야리 中路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것 등이었다. 이 건에 대해 내무국장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낸 통첩안이 첨부되어 있다.¹⁹⁾

다음은 시가지계획위원회 의원과 진해요항부참모장 등이 시가지계획위원회 의원장 大野綠一郎에게 보낸 공문 사본들이다. 警 제66호 1940년 6월 13일 의원 三橋孝一郎의 「시가지계획결정에 관한 건」 鐵改 제303호, 1940. 6. 19일 조선총독부 鐵道局長 山田新十郎의 「부산·대구 및 체천시 시가지계획결정에 관한 건」 1940. 6. 12일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의원 西岡芳次郎, 1940. 6. 7일 진해요항부 참모장²⁰⁾, 1940. 6. 10일 人見次郎이 모두 시가지계획위원장에게 의견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외에 (사본)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의원 山澤和三郎이 1940. 6. 17일 (문서번호 土제181호)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18) 土제175號는 토목과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양식.

19) 조선총독부 내무국, 『부산도시계획결정』, 1936~1944, p.15.

20) 문서번호 鎮要기밀 제16호의 73의 2호.

변경 및 토지구획정리지구추가에 관한 건」에서 철도 조차장을 횡단하는 도로(中路 제2류)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통보하였다.²¹⁾

다음은 1940. 5. 30일자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으로서 정무총감까지 결재를 받았다. 내용은 시가지계획결정은 관계부회 및 면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완료한 것으로서, 이 건은 긴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시가지계획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자문안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시가지계획가로 중 일부 변경 및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에 관한 건」을 비롯하여 「제천 시가지계획구역, 가로 및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에 관한 건」 「대구 시가지계획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지구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 결정에 관한 건」 등이었다. 별지에는 의원명단 및 직위가 수록되어 있다.²²⁾

다음은 1940. 5. 16일 (釜土 제509호) 부산부윤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낸 의견이다.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 일부 변경의 건」에서 장래의 시가화를 예상하여 가야리 및 당감리의 유일한 연락 도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³⁾

이어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9년 7월 25일자 (土제29호)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의 건」이다. 주로 범일정, 양정리, 좌천정의 大路에 관해 변경된 안이다. 변경이유는 철도선로 확장공사에 따른 跨線橋의 위치 때문이라고 수록되어 있다.²⁴⁾ 이외에도 부산부회, 관계 부윤, 관계 도지사, 三橋 등 7명의 의원에게 답신안을 받았다.

그리고 1939년 1월 18일 총독이 재가한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변

21) 조선총독부 내무국, 『위와 同』, pp.19~25.

22) 『앞과 같음』, pp.30~31.

23) 『위와 같음』, pp.33~34.

24) 『위와 같음』, p.61.

경에 관한 건」이 있다. 내용은 조선총독부 고시 제188호로 결정되었지만, 그 중 좌천정·범일정 지구내 大路 제2류 2호 노선은 철도선로 확장공사에 따라 지형상 과선교의 위치를 조금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선의 交會點을 평면교차로 하고 교차점에 광장을 신설할 필요가 인정되어 부산부회에 자문을 얻는다는 것이다.

자문안은 1939. 1. 23일자 부산부회에서 원안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통첩안이 내무국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사에게 통보되었다. 붙임자료는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 중 일부 변경안·변경이유서 및 변경신청서로서, 변경안에는 당초계획과 변경계획을 구분하여 등급, 類別, 번호, 폭원, 기점, 종점, 주경과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은 1938. 11. 19일자 경상남도 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부산 시가지계획가로 일부 변경 신청의 건」이다. 부산부로부터 받은 공문상의 계획이 적당하다고 회신하는 내용이다. 이 문건은 이어서 편철되어 있는 부산부윤의 의견에 관해 회신하는 사항이다.

1938. 11. 8일자 (釜土제623호)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일부 변경인가 신청」 건을 부산부윤이 조선총독에게 발송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大路 제2류 제1호선을 종점으로 하여 약 200m 단축하고 中路 제1류 제12호선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中路 제1류 제12호선은 해운대 방면으로 통하는 주요한 도로로서 장래 적기·문현리·대연리 방면의 발전을 예상할 때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전차 포설시 도로가 좁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도노선 3차선은 철도국에서 8차선으로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횡단하는 과선교를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수록되어 있다.²⁵⁾

다음은 1939. 6. 7일자 「부산 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 정리공사 준공기한 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건」이다. 지령안으로서 부

25) 『앞과 같음』, pp.94~95.

산부윤에게 보낸 공문이다. 내용은 1939. 1. 3일부 시행을 명한 부산 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공사의 준공기한을 1943. 3. 31일로 연장하고 1939. 5. 15일부 釜土제481호·482호·483호로 신청한 부전리·범일정·영선정 각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실시계획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²⁶⁾ 첨부물은 조선총독부 고시 제540호 (1939. 7. 3 일자 조선총독 南次郎) 사본과 변경이유서이다.²⁷⁾ 변경이유는 공지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금의 실적에 비추어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참고용으로 부전리·범일정·영선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년도 비율표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고 변경된 것은 부전리·범일정·영선정 지구의 재원조서와 진정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진정서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조선인 공지소유자들이 금융난·매각난 등으로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워 당국에 제출한 문서로서, 이 지구의 공사가 지연되고 변경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²⁸⁾ 아울러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이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적 자금보다 사적 자금을 위주로 진행된 식민지의 도시계획의 특성을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8. 10. 27일자로 기안되어 약 2달만인 1939. 1. 7일자로 총독 결재된 「부산시가지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시행 명령의 건」이다. 이 기안문은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 지구 중 1938. 5. 28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448호로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신청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도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생산된 것이다. 이에 영선정, 범일정, 부전리 지구의 주택지·공장부지 조성이

26) 『앞과 같음』, pp.97~99.

27) 『앞과 같음』, p.96.

28) 『앞과 같음』, pp.112~149.

현안사항으로서 방지할 수 없기에 시가지계획령 제44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지구의 행정청인 부산부윤이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결재한 것이다.²⁹⁾

첨부물은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부산부윤에게 전하는 명령안으로서 1938년 조선총독부고시 제448호를 써서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신청기한을 지정하여 다음 지구 및 토지구획정리는 그 청에서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이를 시행하고 1942. 3.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둘째, 경상남도 지사에게 내무국장이 보내는 통첩안이다. 이 안에는 부산부윤에게 시행명령을 낸 바 사업비재원을 기재로 하는 것은 시국관계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사업년도 내에 부담금을 써서 사업비를 支辨하고 공사진척 사항을 府廳에 두어 관계인에게 편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외, 1938. 10. 8일자(釜土제135호) 부산부윤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토지구획정리 시행 지정 내신의 건」 시행문, 경상남도 지사가 조선총독에게 시행한 1938. 12. 16일자(釜土1950호) 「토지구획정리 시행 지정 내신의 건」, 1938. 12. 14일(釜土682호) 부산부윤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토지구획정리 시행지정 내신의 건」, 조선총독부 고시 제448호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³⁰⁾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8. 5. 17일자 기안되고 5. 26일자로 결재된 土제203호 「토지구획정리의 시행에 관한 건」으로서 총독이 결재한 문건이다. 부산부의 토지구획정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지구명, 시행인가 신청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부는 일본과 조선의 연락 요

29) 『앞과 같음』, pp.150~157.

30) 『앞과 같음』, pp.151~162.

충지, 군사·경제·교통상 주요지, 대륙발전의 기지로서 점차 그 중요성으로 인해 급속하게 도시가 확장되고 있고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여, 府內 주택문제가 우려할만 하여 주택지·공장부지의 조성은 긴급불가결한 사안이다. 이에 이미 부산시가지계획으로서 결정된 지구 중 가장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영선정·범일정·부전리의 각 지역내 토지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기한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지구명	地區內 町, 洞, 里名	면 적	시행인가신청기한
영선정	瀛仙町 一部	419,640	昭和13年7月31日
범일정	凡一町 門峴里 釜田里 田浦里의 각 일부	1,473,513	
부전리	釜田里 田浦里, 凡田里, 揚亭里의 각 일부	1,939,948	

첨부물은 내무국장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낸 통첩안, 경상남도 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1938. 4. 11일자(土제478호) 「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이 있다.

다음으로 편철된 것은 앞의 土제203호가 생산되게 된 원인이 되는 시행문이다. 부산부윤이 조선총독에게 1938. 3. 25일자(釜土제135호) 「토지구획정리계획 인가 내신의 건」 을 보내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동년 3. 26일자(土제478호)로 접수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부산 시가지계획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부산부가지체가 되어 영선정·범일정·부전리 지구의 일부지역 약 3백㎡를 토지구획정리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은 부산부에서 생산된 「소화 13년도 토지구획정리계획서」 이다. 이 계획서는 24쪽 분량으로서, 부산부 시가지계획 제 1토지구획 정리계획서, 범일정 토지구획 정리계획서, 부전

리 토지구획 정리계획서, 영선정 토지구획 정리계획서 등으로 나누어 계획총괄표, 재원조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산부 시가지계획 제 1토지구획 정리계획 총괄서에 따르면 지출은 일금 1,133,950원으로서, 그 내역은 공사비, 사무비, 일시차입금이자, 환지청산교부금, 예비비 등이다. 수입도 1,133,950원으로서 부담금이 1,063,850원으로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일정 토지구획정리계획 비용은 419,750원, 부전리 토지구획정리계획 비용은 571,200원, 영선정 토지구획정리계획 비용은 143,000원이다. 이 문서를 통해 볼 때, 재원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나누어 조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잡수입, 환지청산 징수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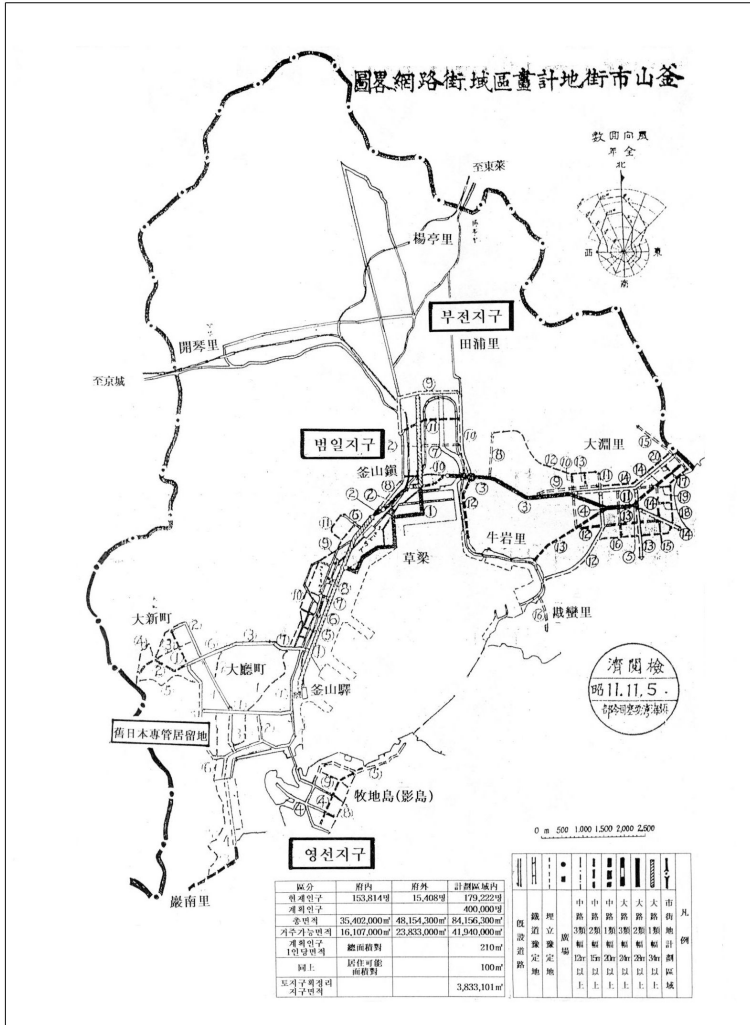
다음은 「부산시가지계획 개요」³¹⁾가 시가지계획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계획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결재된 기안문이 아니며 단독으로 작성되어 편철되어 있다. 앞뒤문맥으로 보아서 참고철인 듯 하며, 그 내용은 첫째, 「시가지계획구역」에는 계획목표년도(1965년), 계획인구(40만명), 총면적, 거주가능면적, 밀도, 구역, 제1표 부산시가지계획구역 면적표가 수록되어 있다. 둘째, 「가로망」에는 폭원별 가로의 종류(대·중·소)³²⁾, 제2표 부산시가지계획 가로 폭원별 일람표, 제3표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 일람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 「토지구획정리」에는 토지구획 예정면적(6,214,000평)³³⁾ 부산시가지계획구역 가로망 약도(진해만 요새사령부 검열완료 1936. 11. 5)가 수록되어 있다.

31) 『앞과 같음』, p.208.

32) 『앞과 같음』, pp.211~216.

33) 『앞과 같음』, p.217.

[그림] 부산의 시가지계획지구 가로망 약도



출전 : 釜山府, 『釜山都市計劃決定』, 1937, 218쪽.

비고 : 영선지구·부전지구·범일지구·구일본전관거류지 라벨을 필자가 붙임.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6. 11. 23일 (土제1804호) 경상남도 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낸 시행문으로서 「부산 시가지계획구역 同 가로망 및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이다. 부산부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신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부에 보낸 문건이다. 1936. 11. 17일자 답신서에는 부산부회 의장 山本坂太郎이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문건에서는 大路 제3류 4호선에 통하는 남빈매축지 [昭和通] 22m 노선을 25m로 확축할 것, 舊서면 미계획지구의 계획을 조속히 결정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³⁴⁾

다음은 1936. 11. 26일자 (釜土제587호) 부산부윤이 조선총독부 내 무국장에게 보낸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이다. 부산 시가지계획 자문안에 따라 이미 山岡 기사를 파견하였으며, 간절한 설명으로 인해 부회에도 그 취지를 양해받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시가지계획위원회에 의견이 붙여질 경우, 부윤은 사업당면의 관계자로서 위원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음. 둘째, 계획 시행시기는 대체 내년도 初頭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노선의 확장은 府民의 이해 및 府勢의 발전에 영향이 적지않으므로 속히 그 확장구역을 확정할 것. 넷째, 舊 府內에 상당한 광장을 설치할 것 등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로 굴곡부, 보수천 복개, 버스 전차 운행계획, 국고보조, 전차 폭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 계획수립시 부산부에 알려줄 것을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³⁵⁾ 이 문건은 부산부윤이 조선총독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제3회 시가지계획위원회의안 (1937.

34) 『앞과 같음』, p.220.

35) 『앞과 같음』, pp.220~221.

1. 19일 제출) 이다. 議제1호는 부산시가지계획구역결정에 관한 건, 議제2호는 부산시가지계획가로결정에 관한 건, 議제3호 부산 시가지 계획 토지구획정리 결정에 관한 건이다. 1937. 1. 17일 제출했으며, 議제1호 부산시가지계획구역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부산부 일원 (1936. 2. 14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한 부산부의 관할구역) 별지도면 표시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도면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시가지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부산시가지계획구역 결정이유서」, 「시가지계획 토지구획 결정이유서」, 「부산 시가지계획 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 결정 이유서」, 「부산시가지계획(녹지지역지정, 풍치지구지정, 공원결정) 결정이유서」 등이다.

첫째, 「부산시가지계획구역 결정이유서」에서는 결정 이유에 대해 부산부가 조선과 일본의 통상의 요충지로서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 인구가 많고, 철도 경부선의 종단항이며 국제교통로의 주요한 지위 등을 부각시켰다. 또한 府內에는 부청을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제회사가 모여 지방행정 및 산업 경제의 중심이 되어 무역액, 공업, 호구의 증가를 보인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府內의 거주가능면적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가옥 건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1965년의 인구를 상정하고 부산부의 새로운 당역을 부산시가지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다. 총 면적은 84,156,300㎡ 즉 25,457,000평 (해면제외)로서 계획인구 1인당 거주가능면적은 100㎡로 된다는 것을 골자로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둘째,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결정 이유서」에는 부산부의 가로는 좁고 난잡하며 舊府내 거주가능면적에 대한 도로 면적이 약 8.3%에 불과하다는 점과 舊府內의 인구포화 상태로 인해 가옥이 교외로 무질서하게 건축되었다는 점을 가로결정 이유로 들었다.

셋째,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 결정 이유서」에는 토지구획정리는 시가지계획 시행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필의 모양을 바로하고 어떤 지번도 도로에 접하도록 배치한다. 또 저습한 토지는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시가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1937. 1. 19일 제출한 議제3호 부산 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 면적은 6,214,000m² (1,879,735평)이었다.

첨부물은 「부산시가지계획 가로·토지구획정리지구 자문 답신 요항」이다. 자문회명, 답신요항, 부윤의견요항, 도지사부신요항, 처리요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부산부회의 자문에 대한 것이다.³⁶⁾

그리고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 同가로 및 同토지구획정리 지구 추가결정안」이 첨부되어 있다. 정식 기안문이나 시행문의 년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붉은 색연필로 1938년 4월 5일 (1차)가 기재되어 있다.³⁷⁾

넷째, 「부산시가지계획일단의 주택지경영지구 결정안」이 편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지 구 명	지구내 町里名	면적 (m ²)
동대신정 제1	동대신정 3정목의 일부	약 10,000
동대신정 제2	동대신정 3정목의 일부	약 32,000
범일정 제1	범일정의 일부	약 26,000
범일정 제2	범일정의 일부	약 33,000
양 정 리	양정리의 일부	약 86,000
대 연 리	대연리의 일부	약 51,000
감 만 리	감만리의 일부	약 51,000

36) 『앞과 같음』, pp.222~235.

37) 『앞과 같음』, pp.236~255 중복.

다섯째, 「부산시가지계획 일단의 주택지경영 지구 결정 이유서」에는 그 결정 이유로서, 부산이 국제교통의 요충이고 중국 사변 이래 병참기지 혹은 산업기지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인구가도 격증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은 이러한 인구증가에 따르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 주택지가 별로 없고 지가가 등귀하여 고지대에 하급노동자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지구 7개소를 선정하여 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로 결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여섯째, 추가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가지계획 일단의 주택지경영지구 추가 결정안」이다. 추가지구는 동대신정과 영주정의 일부로 총 28,830㎡를 추가하였다. 「부산시가지계획일단의 주택지 경영지구 추가 결정이유서」에는 그 이유를 대신정, 영주정간에 터널의 개착 후 굴착 토석으로 매립지를 조성하여 일거양득을 얻는다는 전략이다.³⁸⁾

일곱째, 議案 제4호 「부산시가지계획 (녹지지역 지정, 풍치지구 지정, 공원 결정) 안」이 편철되어 있다. 그런데 1936년도·1937년도의 공문서가 편철되어 있다가 갑자기 1944. 1. 8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 14호가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는 아마도 문서의 맨 위에 편철되어야 하지만 문맥상 흐름을 참작하여 후에 끼어넣은 듯 하다. 내용은 부산시가지 녹지지역 (면적 : 3857㎡), 풍치지구(면적 : 약 4530만㎡), 부산시가지 계획 공원지역이 수록되어 있다. 시가지계획공원은 대신, 송도, 연지, 양정공원 등 모두 32개 지구에 1,980,000㎡를 고시하였다.

그리고 「부산 시가지계획 (녹지지역지정, 풍치지구지정, 공원결정) 이유서」에는 그 이유로서, 부산의 지리적·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38) 『앞과 같음』, pp.256~263.

통과객 급증, 상주인구도 격증으로 인해 과밀화·훼손문제를 들고 있으며, 방공상 건축물의 疏開에 소요되는 空地 보존과 부산의 특이성으로서 일본 도항에 저지당한 細民 증대 경향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부산시가지계획구역 결정이유서인데, 앞에서 서술한 내용인 271~276쪽과 중복되어 있으나 가장 정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1표부터 제9표까지 부산시가지계획구역 면적표·舊府내 호구누년표·인구누년표·인구증가선·인구증가 추정표·인구밀도표·밀도별 정동수 및 인구표(1934년 말), 부산정차장 앞부터 시가지계획 구역내 각 里에 이르는 거리 및 도달시간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부산 시가지계획가로망 결정이유서」도 287~295쪽과 중복되었다. 그 이외 부산시가지계획 가로폭원별 일람표, 가로일람표(노선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주경과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제1표부터 제5표까지 舊府내 도로개수 공사 총괄표, 舊府내 도로등급별 연장 및 면적표, 舊府내 기설 도로 조사표, 舊府내 車輛數표, 조선도시차량통계표(경성·부산·평양·대구·인천 등)가 수록되어 있다.³⁹⁾ 그림은 市街割標準圖, 경성에서 가로의 방향과 日當의 관계도표, 경성에서 가로의 방향에 의한 건물의 日照관계도, 부산풍향 回數 및 풍속도, 가로표준 단면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부산시가지계획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이유서」가 중복 편철되어 있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8. 3. 16일 기안되고 3. 30일 총독 결재된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 同 가로 및 同토지구획정리 지구 추가결정에관한 건」이다. 시가지계획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39) 『앞과 같음』, pp.267~307.

제 府會의 자문을 완료하고, 시가지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국 기타의 관계상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신중하게 조사 考究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제1 첨부물은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 및 同가로 同토지구획정리 지구 추가 결정안」으로서, 첫째 부산 시가지계획 가로변경표로서 당초계획·변경계획·등급·유별·번호·폭원·기점·종점·주경과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부산시가지계획가로 추가결정표가 수록되어 있다. 셋째, 부산시가지계획 토지구획 정리 지구 추가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구역은 별지도면 표시대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도면이 없으며 면적은 약 7,857,000m²이다.

제2 첨부물은 통첩안 (제1안) 내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문건으로서, 기안문의 추가결정안에 대하여 5월에 조선총독부 고시 제308호대로 결정되었으므로 후속대책을 하라는 내용이다.

제3 첨부물은 내무국장이 체신국장 부산부윤에게 각각 보낸 문건이다.⁴⁰⁾ 다음은 1937. 12. 3일 기안한 「시가지계획 결정에 관한 건」이다. 개성부 외 6개소의 시가지계획 구역, 同 가로 및 同 토지구획 정리 지구 결정 및 부산부 외 3개소의 시가지계획 가로 토지구획 정리지구 등의 변경·결정에 관해서는 이미 관계 부회 및 면협의회의 자문을 완료한 바 시가지계획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국관계상 시급하게 개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받으라는 내용이다. 주의할 것은 기안일자는 있으나 각 담당자의 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첨부물은 1938. 2. 10~3. 4일자까지 식산국장, 경무국장, 농림국장, 철도국장, 체신국장, 조선군참모장 등이 시가지계획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낸 의견서이다.⁴¹⁾

40) 『위와 同』, pp.316~331.

41) 『위와 同』, pp.332~347.

다음은 1937. 1. 7일자 기안되고 1. 14일자로 결재된 「부산시가지 계획 평면도에 관한 건 案 (對 1936. 12. 7일附 土제1,804호)」으로서, 내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기안문이다. 내용은 시가지계획 도면은 진해항요새사령관 승인 조건하에 부산도시계획입안 및 연구 목적으로 공무용으로 사용하여서 일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고 도면은 책임자를 두어 회수한 위에 이를 소각하라는 것이다. 총 41부인데, 당시 보관된 것은 15부이었다. 이 문건을 통해 보면 별지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문건의 경우는 거의 소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첨부물은 土제1,804호 1936. 12. 7일자 경상남도지사가 내무국장에게 보낸 「부산시가지계획 평면도 송부의 건」(1936. 11. 2일 土제 505호와 관련), 土제587호 1936. 11. 26일자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부산부회 의장 山本坂太郎이 조선총독 南次郎에게 보낸 1936. 11. 2일자 土제505호에 대한 답신서 등이 다.⁴²⁾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1936. 11. 9일 내무국장 전결된 「부산시가지계획구역 同 가로망과 同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자문서 송부의 건」이다. 내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행정구역 확장 결과 의원 3명 증원을 통보한 내용이다.⁴³⁾

다음은 仰제749호 1937. 8. 20일자, 토제553호와 관련된 「부산시가지계획가로변경과 同 가로 및 同 토지 구획정리 지구 결정에 관한 건」으로서 총독결재문건이다. 내용은 부산시가지계획 가로 및 同 토지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1937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 188호로 결정된 舊 서면북부 및 서부 철도개량계획의 확정에 의해 결정된 것인데, 다시 街路 35선, 토지구획정리 지구 약 77만^m를 추

42) 『앞과 같음』, pp.379.

43) 『앞과 같음』, pp.381~388.

가한다는 내용이다.⁴⁴⁾

다음은 1936. 7. 15일자 기안되고 (仰제694호) 1936. 10. 27일자 총독 결재된(부재 후열람) 「부산시가가지계획구역 同 가로망 및 동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이다. 내용은 부산부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산부윤·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통첩안이 포함되어 있다. 첨부물은 「부산시가가지계획 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 지구 결정이유서, 평면도」 등에 대한 인쇄본이다.

다음으로 편철되어 있는 것은 釜土제67호 1936. 5. 15일자 부산부윤이 내무국장에게 보낸 시행문으로서, 「부산도시계획에 대한 진해항요새사령관의 요망에 관한 건」이다.

제1 첨부물은 1936. 5. 11일자 진해항 요새사령관 橋本群이 부산부윤 土屋傳作에게 보낸 鎭地제67호의 사본이다. 요망사항은 대체로 여섯가지이다. 첫째, 요새지대 제3구역 내 연계유지되어 지장이 없을 것 둘째, 부산부 주변의 고지는 전지방공진지로 예정된 지역이므로 이용시 반드시 연락 요망 셋째, 유사시 교통의 두절 혼란 피하기 위해 도로망을 정리할 것 예를 들면 대신정-초량정, 넷째, 수도·가스의 설비는 폭탄에 의한 파괴에 대하여 소방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전선은 지하매설하고 등화관제의 종류에 따라 송전선을 별개로 정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 여섯째, 수도단수의 경우를 고려하여 저수지 풀을 장려하고 井戶를 보존할 것 또 피난재해국한 등을 위해 시내 각소에 공원 등의 空地를 둘 것 등을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안은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할 것을 통지하였다.⁴⁵⁾

제2 첨부물은 朝參發 제170호로서 조선군참모장 佐技義重이 조선

44) 『앞과 같음』, pp.389~395, pp.338~362의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

45) 『앞과 같음』, pp.446~447.

총독부 내무국장 大竹十郎에게 보낸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회답」이다. 내용은 첫째, 대청정 헌병대 숙사를 통과하는 12m 도로는 가능하면 숙사지를 피하여 구축할 것, 해안 空地는 시민운동장 공원 등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음은 1936. 5. 21일자 鎮地75호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진해항요새사령관 橋本群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牛島省三에게 보낸 문건이다. 대로와 철도선로의 교차는 수직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1936. 5. 15일자 鎮地기밀 제63호 진해요항부 참모장이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낸 시행문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 회답」으로서 특히 의견 없다는 내용이다.⁴⁶⁾

다음은 1936. 5. 7일자 기안된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내무국장 대결인 비밀문건이다.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조선군사령관, 진해만요새사령관, 진해요항부사령관에게 보낸 기안문이다. 부산시가지계획 구역 및 가로망 계획 별지도면과 같이 입안한 바 이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다는 내용이다.⁴⁷⁾ 이 기록물은 부산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내무국에서 결재한 최초의 기안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의 시가지계획과 관련한 공문서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조선총독부 기록물군 중에서 71철

46) 『앞과 같음』, p.451.

47) 『앞과 같음』, pp.452~453. 실제로 도면은 없음.

354건을 대상으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가장 중요한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제를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부산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기안된 최초의 문건은 『부산도시계획결정철』에 수록된 1936. 5. 7일자 「부산시가지계획에 관한 건」으로서 내무국장이 대결한 비밀문건이다.

그리고 부산 시가지계획과 관련하여 조선총독이 결재한 문서는 1936. 10. 27일자 생산된 「부산시가지계획구역 同가로망 및 同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 결정에 관한 건」 등 5건이다. 북부지역이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관보에 고시되는 것과 달리, 부산은 1936년에 가서야 시가지계획이 결정되고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결정과정의 회의록도 일정부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 특히 정책결정 관련 기록물 중 부산부에서 조선총독부로 보낸 시행문은 있으나 생산된 기안문 원본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록물철들을 통해 부산 시가지계획의 정책에 대한 결재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부·경상남도·군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조선시가지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선총독이 결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물 중 『부산도시계획결정』철은 1936년부터 1944년까지 부산의 도시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로서, 부산의 시가지관련 기록물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 기록물군은 문서를 중심으로 편철되어 있으며, 사진 일부와 도면은 첨부물로 부착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부산에서 전개된 시가지계획이 조선총독의 일방적 시행 결의로 각 府·道에서 상명하달식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의견은 옳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문서는 1936년 각부경제예산, 1938년 부산부 일반경제관계철, 1939년 『昭和 14年度 起債綴』, 1940·1941·1942년도 부산부 세입출 예산철 등이 있다. 예산관련 기록물은 비교적 연도별로 양호하게 남아있으나 시가지계획 정책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 시가지계획 관련 기록의 특징은 정책과 기구, 예산, 시행에 대한 기안문 원본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경로·예산책정·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들은 증거적·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일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이 기록물군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의 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이나 시행과정을 비교분석하면서 부산부의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발굴·수집·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